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운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525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개정	3
가. 개요	3
나. 외국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해외자원개발사업 법인 출자지분율 요건 완화(윤영석의원안) ..	5

I. 개요

1. 운영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52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운영석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0. 10.
- (3) 회 부 일 : 2025. 10.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유보재원의 국내 송금촉진 유도 등을 위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중과세 조정 확대를 위해 내국법인이 10%(해외자원개발사업 외국법인의 경우 5%) 이상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음.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제품의 원료인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해외자원 수요기업들도 안정적인 핵심자원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 참여에 적극적인 검토 및 확대하려는 추세임.

하지만 핵심자원 보유국에서의 자원개발사업은 대개 막대한 투자비용이 요구되며, 투자비와 리스크 분담 등을 이유로 여러 기업이 동시에 참여하는 특성이 있어 우리기업이 막대한 투자비를 투입했음에

도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 출자지분(5% 이상)을 얻기 힘들어 핵심자원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출자지분 요건을 5%에서 1%로 낮춤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 다변화 및 핵심자원 안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1항, 제57조제5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개정

가. 개요

□ 외국납부세액공제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 금액에 대하여는 ① 외국에서 외국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② 국내 소득에 합산되어 우리나라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 국가에 부담한 세금을 자국의 세금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에는 해외소득면세방식과 외국납부세액방식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 외국납부세액방식을 따르다가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해외소득면세방식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음.

해외소득면세방식의 경우, 내국법인에 대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내국법인의 해외소득에 대해서는 현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말하며, OECD 중 우리나라·미국·일본 등 32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임.

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의 경우, 내국법인에 대해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되(해외소득도 국내세율 적용), 해외

국가에 부담한 세금을 자국의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말하며, OECD 중 이스라엘 등 5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임.

-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은 국내기업의 관점에서 국내 투자소득이든 해외 투자소득이든 동일한 세부담을 함으로써 대내외 투자소득 간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인 반면, 해외소득면세방식은 우리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타국 기업과 동일한 세부담을 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현지에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과 해외소득면세방식의 비교]

구분	해외소득면세방식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 (중전)
개념	내국법인에 대해 국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해외소득은 현지세율 적용)	내국법인에 대해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 (해외소득도 국내세율 적용)
도입국가 (OECD)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 32개국	칠레, 아일랜드, 이스라엘, 멕시코, 콜롬비아

나. 외국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해외자원개발사업 법인 출자지분을 요건 완화(윤영석
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18의4) ○ (익금불산입 대상) ①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법인세법」 §16 ※ 외국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②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제18조제8호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 ○ (외국자회사 요건) 지분을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5% ○ (익금불산입의 적용 제외) ① 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 배당 및 배당 간주를 적용받은 금액 ② 특정외국법인(CFC)의 수입배당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 혼성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 국외에서는 이자비용으로 취급되나 국내에서는 배당소득으로 간주	□ 외국자회사 요건 중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을 요건 완화 ○ (외국자회사 요건) 지분을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1%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 (익금불산입률) 95% □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57) ○ (외국 납부 세액공제 대상)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외국자회사 요건) 지분을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5%	○ (현행과 같음) □ 외국자회사 요건 중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율 요건 완화 ○ (외국자회사 요건) 지분을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1%

* 윤영석의원안 2025. 10. 10. 발의(의안번호 13525)

□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¹⁾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및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²⁾
적용대상 외국자회사 요건 중 출자 지분에 대한 요건을 기존 5%

1) 구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을 말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산물
2. 축산물
3. 수산물
4. 임산물
5. 광물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란 국내의 모기업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 상당액을 우리나라 모기업에 세액공제를 하는 것을 말함. 주주인 우리나라 모기업이 해외 원천지국에서 직접 납부한 세액이 아닌 피투자회사인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납부한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이를 간접외국납부세액이라고 함.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① 법인간의 배당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배제하는데 목적이 있음. ② 또한,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나라의 모기업이 지점형태 또는 자회사형태로 진출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인 이른바 기업형태의 선택에 따른 과세불공평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없는 경우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해외진출시 지점형태만을 선호하게 될 것이며, 지점형태진출과 자회사형태의 진출은 경제적 실질이 같지만, 법외관상의 차이로 인해 과세상의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음. 결론적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취지란 국제적 이중과세 배제와 함께 내국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지점형태의 진출과 자회사형태의 진출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것임.

이하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이라고 표기함., 2022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

에서 1%로 완화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외국자회사에 대해 2006년 이후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요건 중 지분율 요건을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5%로 낮게 두는 특례를 두었으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조특법 22조, ~2016년 일몰) 특례를 함께 두어 외국납부세액의 의제와 택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후 법인세 면제 특례가 일몰됨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5% 특례만 적용되고 있었음. 이후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적용 받거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음으로써,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자회사와 관련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에 대한 요건을 5%에서 1%로 완화함으로써, 핵심자원의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입법취지가 있음.

첫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에너지 안보 부각 등으로 해외자원개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위한 세제지원이라는 입법취지가 있음.

자원개발투자의 경우 일반적인 해외투자보다 그 원본의 회수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자본의 회수기간이 장기간인 경우가 대부

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둘째, 2022년 정기회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가 도입되면서 익금불산입·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일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25%에서 10%로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자회사는 5% 지분율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현행 지분율 5% 요건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원개발 참여자들이 존재하며,³⁾ 해외자원 투자역량이 미흡한 국내기업이 소규모 지분투자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해외자원개발사업 지분 1~5% 보유 사업자('24년말 신고기준)]

구분	대기업	중견·중소	공공	개인
개수	12	4	10	2

주1: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 개발사업을 중복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 1곳으로 집계

주2: 해당 해외자원개발사업수는 32개 (석유, 가스 10개, 광물 22개)

자료: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2023년 정기회 당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에 해당 요건을 2%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으나, 해외자원개발 회사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3) 2024년 말 기준 해외자원개발사업 지분율 1~5% 보유한 기업·개인은 28곳이고, 대기업(12곳), 중견·중소기업(4곳), 공공기관(10곳), 개인(2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해외자원개발 사업수는 총 32곳임(석유·가스 10개, 광물 22개), 자료 한국석유공사 「해외석유개발현황」, 한국광해광업공단 「해외자원개발현황분석」

제기됨에 따라 정부안을 반영하지 않고 현행 요건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⁴⁾

둘째,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한 일반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은 △60%(25%→10%) 완화되었으나,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지분율 요건을 △80%(5%→1%) 완화하려는 것으로 일반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수준보다 높은 수준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과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통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지원했으나 자원 확보 성과가 불분명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과거 해외자원개발이 단기간 M&A, 소지분·비운영사업 투자 등 외형확장식 자원개발에 치중되었고 안정적인 공급망 조성을 위한 운영권 확보 사업과 같이 내실 있는 투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⁵⁾

문 의 처

02)6788-5158

4)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4년, 국회예산정책처

5)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방안', 2013. 10.